

Global Market Report

EU-베트남 FTA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목 차

요 약 / 1

I. EU-베트남 FTA 개요 / 2

- 2 1. 추진 개요
- 3 2. FTA 발효 시 양측 경제에 미칠 영향

II. 주요 품목별 양허일정 / 4

- 4 1. EU측의 對 베트남 양허일정
- 4 2. 주요 품목별 양허일정

III. 원산지 규정 / 8

- 8 1. 원산지 결정기준
- 13 2.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

IV. 투자 · 시장접근 · 지속가능발전 / 18

- 18 1. 투자분야
- 20 2. 시장접근
- 22 3. 지속가능발전

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23

- 23 1. 3자간 교역현황 및 투자현황
- 34 2.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

VI. 시사점 / 34

첨부 : 원산지증명서 서식 외 / 37

요 약

- EU와 베트남은 '12년 6월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15년 8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2일 협정에 정식 서명함. 동 협정은 비준 과정을 거친 후 '18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동 FTA는 EU와 베트남 양자에게 큰 이익을 지님. EU는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으로, FTA 발효 시 베트남은 연 GDP 0.5%p, 수출 4~6%p 증가를 예상함. 아울러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예상됨. EU 입장에서 베트남은 제5위 투자대상국이며, 베트남의 TPP 참여, AEC 출범과 맞물려 동 FTA를 베트남 단일시장보다 향후 EU-아세안 FTA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있음.
- 동 FTA는 한국을 위시한 제 3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세계 생산기지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우리나라에게는 제4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임. EU 또한 우리의 제3위 교역국으로, 금번 FTA로 각국이 EU와 베트남 시장에서 가졌던 지위와 혜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존에 추진했던 시장 진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임.
- 먼저, 관세 혜택으로 EU와 베트남 시장에서 품목별로 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기존에 두 시장에 진출한 제3국 기업은 물론, 앞으로 성장할 베트남 기업도 해당됨. 이는 동시에 기회 요인도 되는데,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기업 입장에서 동 FTA를 통해 베트남을 경유하여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염두가 필요함. 품목별 양허스케줄과 GSP 등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확인, 한국산 제품의 관세 혜택에 대한 현지 바이어 대상 홍보, 생산과정에서 환경, 기술, 노동, 원산지 등 EU에서 제시한 엄격한 기준에 대한 대비 필요

I

EU-베트남 FTA 개요

1. 추진 개요

'15년 12월 2일 EU와 베트남은 FTA협정에 정식 서명함. 양측은 '12년 6월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15년 8월 협상 타결을 선언함. 동 협정은 비준과정을 거친 후 '18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추진계기 및 목적

- EU,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베트남과 FTA를 체결
 - '14년 체결된 EU-싱가포르 FTA 이후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EU와 FTA를 맺은 국가임.
 - EU는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세안과의 지역간 FTA 체결을 원하고 있음(* EU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도 FTA 협상 진행 중).

<양측의 FTA 협상 연혁>

일정	협상 연혁
2012. 06. 26	EU-베트남 FTA 협상 개시
2012. 10. 12	제 1차 FTA 협상 완료
2013. 01. 25	제 2차 FTA 협상 완료
2013. 04. 26	제 3차 FTA 협상 완료
2013. 07. 05	제 4차 FTA 협상 완료
2013. 11. 08	제 5차 FTA 협상 완료
2014. 01. 17	제 6차 FTA 협상 완료
2014. 03. 21	제 7차 FTA 협상 완료
2014. 06. 27	제 8차 FTA 협상 완료
2014. 09. 26	제 9차 FTA 협상 완료
2014. 10. 14	제 10차 FTA 협상 완료
2015. 01. 23	제 11차 FTA 협상 완료
2015. 03. 27	제 12차 FTA 협상 완료
2015. 08. 04	EU-베트남 FTA 타결
2015. 12. 02	EU-베트남 FTA 체결
2016. 02. 01	FTA 협정문 초안 발표
2018년	발효 예상

자료원 : Eurostat

- EU-ASEAN FTA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 본래 유럽연합은 아세안과의 지역간 FTA 협상체결을 원했으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별국가들과의 양자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EU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 양자 FTA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장기적인 EU-아세안 지역간 FTA 협정으로 가기 위한 토대로 삼는다는 계획임.

2. FTA 발효 시 양측 경제에 미칠 영향

□ (베트남) GDP 0.5%p, 수출량 4~6%p 증가 전망

-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다자교역정책부 Lê Triêu Dung 사무차장은, EU와의 FTA가 발효될 시 베트남의 GDP는 0.5%p, 수출의 경우 4~6%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동 사무차장은 '20년도 베트남의 대EU 수출규모가 약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EU)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이정표 역할

- EU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우처럼 두드러진 경제성장 기여는 나타나기 힘들 전망임. 다만 이번 베트남과의 FTA가 향후 EU-아세안 지역간 FTA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역할을 할 것임.
- '15년 8월 4일, EU 통상총국 집행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은 'EU-베트남 FTA는 개발도상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전하며, '14년 싱가포르와의 FTA에 이어 베트남 FTA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II

주요 품목별 양허일정

1. EU측의 對 베트남 양허일정

- 대부분의 품목이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 적용되며, 몇몇 민감 품목들의 경우 단계별로 철폐됨.
- 양허유형은 A, B3, B5, B7, B9, B10, B15로 분류됨. 양허유형 A의 경우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B3의 경우에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되어 4년 후 관세가 철폐됨. 또한 양허유형 B5, B7, B9는 각각 6단계, 8단계, 10단계로 균등 철폐되어 6년, 8년, 10년 후에 관세가 사라짐.

2. 주요 품목별 양허일정

□ 섬유 및 의류 제품

- 견·견사·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면직물, 마류의 사와 직물, 인조 필라멘트섬유,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한 직물, 편물 품목(HS 50~60류)들은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됨.
-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류)의 경우 발효 즉시 철폐되지만, 폴리에스테르(5503.2000 및 5506.2000) 2개 품목은 예외적으로 4년 후 철폐될 예정임.
- 의류제품(HS 61류, 62류)의 경우, 여성용 블라우스(6106), 유아용 의류(6111), 스타킹 및 양말(6115), 장갑(6216)등의 수입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나 가디건류(6110)는 6년 후, 면바지(6204.62) 품목의 경우 8년 후 철폐되는 등 품목별로 관세양허 스케줄이 상이함.

<섬유 및 식물 제품 관세 양허표>

HS 분류	기준세율(%)	양허유형
50(견, 견사, 견직물)	0~7.5	즉시철폐
51(양모, 수모)	0~8	즉시철폐
52(면, 면사, 면직물)	0~8	즉시철폐
53(마류의 사와 직물)	0~8	즉시철폐
54(인조필라멘트섬유)	3.8~8	즉시철폐
55(인조스테이플섬유)	4~8	즉시철폐(단, HS 5503.20.00, 5506.20.00은 4년 후 철폐)
56(부직포)	3.2~12	즉시철폐
57(양탄자)	3~8	즉시철폐
58(특수직물)	5~8	즉시철폐
59(도포직물)	4.4~8	즉시철폐
60(편물)	6.5~8	즉시철폐
61(의류)	8~12	즉시철폐, 4년, 6년*
62(의류제품)	6.3~12	즉시철폐, 4년, 6년, 8년*
63(기타섬유제품)	0~12	즉시철폐, 4년, 6년*

* 주 :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첨부된 원문파일 참조

□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 방수신발(HS 6401), 운동화(HS 6404.1100), 실내화(HS 6404.20), 기타신발(HS 6402)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는 16.8~17%의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FTA가 발효되면 발효 즉시 철폐되어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한편, 이외의 방직용 섬유재료 신발(HS 6403) 및 가죽이 생산재료로 사용된 일부 제품(HS 6404) 등에 대해서는 4년 혹은 8년 후 관세가 철폐됨.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관세 양허표>

HS 분류	기준세율(%)	양허유형
64(신발)	3~17	즉시철폐, 4년, 6년, 8년*
65(모자)	0~5.7	즉시철폐(단, HS 6505.0010 및 6506.9910은 6년 후 철폐)
66(우산, 지팡이)	2.7~5.2	즉시철폐
67(인조제품)	1.7~4.7	즉시철폐

* 주 :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첨부된 원문파일 참조

□ 자동차 및 부품

- 자동차의 경우, 특수용도차량(HS 8705)은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나 버스(HS 8702)는 8년 후 철폐될 예정임. 또한 승용차

(HS 8703)와 설상주행용 차량(HS 8703.1011)은 4년 후 관세가 사라지고 그 외 품목들은 8년 후 철폐됨.

- 한편 현재 3~4.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부품(HS 8708)의 경우 FTA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임.

□ 전자제품

- 대부분의 제품이 즉시 철폐되거나 라디오방송용수신기, 영상모니터, 컬러프로젝터 등은 4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며 음성 및 영상 재생기기 품목의 경우 6년 후 철폐됨.

□ 철강제품

- 그 외 철강제품(HS 73)의 경우, 볼트(3.7%), 철강제 식탁용품(3.2%) 등 1.7~3.7%의 관세가 부과되어왔으나 FTA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될 예정임.

<주요 품목별 EU 관세 양허표>

HS 분류	기준세율(%)	양허유형
28~38(화학)	0~9	즉시철폐, 4년, 6년, 8년
33(화장품)	0~12.8	즉시철폐 (* 예외: HS 3302.1029는 8년후 철폐)
39(플라스틱)	0~6.5	즉시철폐
40(고무)	0~6.5	즉시철폐, 6년
68(시멘트, 석면)	0~3.7	즉시철폐
69(도자제품)	0~12	즉시철폐, 4년, 6년
70(유리)	0~11	즉시철폐, 4년
71(귀금속)	0~4	즉시철폐
72(철강)	0~7	즉시철폐 (* 예외: HS 720249는 8년후 철폐)
73(철강제품)	0~3.7	즉시철폐
74(동제품)	0~5.2	즉시철폐, 4년
75(니켈제품)	0~3.3	즉시철폐
76(알루미늄제품)	0~10	즉시철폐, 4년, 8년
78(연과그제품)	0~5	즉시철폐
79(아연과 그제품)	0~5	즉시철폐
80(주석과 그제품)	0	즉시철폐
81(기타 비금속)	0~9	즉시철폐
82(비금속제공구)	1.7~8.5	즉시철폐
83(각종비금속제품)	0~3.7	즉시철폐

84(보일러,기계류)	0~9.7	즉시철폐
85(전기전자제품)	0~14	즉시철폐, 4년, 6년
86(철도)	0~3.7	즉시철폐
87(일반차량)	0~22	즉시철폐, 4년, 6년, 8년
88(항공기)	1.7~7.7	즉시철폐
89(선박)	0~2.7	즉시철폐
90(광학,의료기기)	0~6.7	즉시철폐
91(시계)	3.7~6	즉시철폐, 4년, 6년
92(악기)	1.7~4	즉시철폐
93(무기)	0~3.2	즉시철폐, 4년
94(가구및조명기기)	0~5.7	즉시철폐
95(완구,운동용구)	0~4.7	즉시철폐

* 주 : HS 코드 세부품목에 따라 양허스케줄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품목별 세부 스케줄은 첨부된 원문파일 참조

□ 관세율쿼터

- 이 밖에도 EU는 베트남산 농수산물식품류에 대해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함.

<저율관세할당 적용 품목>

(단위 : metric tonnes)

품목	HS 코드	적용물량
조란	0408.1180, 0408.1981, 0408.1989, 0408.9180, 0408.9980	연간 500톤
마늘	0703.2000	연간 400톤
스위트콘	0710.4000A, 2001.9030A, 2005.8000A	연간 5000톤
쌀	1006*	연간 20000~30000톤
카사바전분	1108.1400	연간 30000톤
참치	1604.1411	연간 11500톤
맛살(surimi)	1604.2005	연간 500톤
설탕과 고과당제품	1701.1310~9990, 1702.3050, 1702.9050~79, 1702.9095, 1806.1030~1090	연간 20000톤
특수설탕	1701.1490	연간 400톤
버섯	0711.5100, 2001.9050, 2003.1020,30	연간 350톤
에탄올	2207.1000, 2207.2000	연간 1000톤
마니톨, 소르비톨, 덱스트린 등	2905.4300~4491, 3505.1010, 3505.1090, 3824.6019	연간 2000톤

* 주 : HS코드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III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규정 개요

- EU-베트남 FTA 협정문은 총 18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원산지에 관한 내용은 제 4장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및 부속서 A ‘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in order for the product manufactured to obtain originating status’에 규정되어 있음.
- EU와 베트남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및 보충적기준(미소기준, 누적기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협정문에서 다룸. 한편 HS 코드로 분류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에서 별도로 규정함.

□ 일반적 기준

- EU-베트남간 합의된 완전생산기준은 아래와 같음.
 - 양국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 양국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채소
 - 양국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 양국 영역에서 사냥, 어로행위를 통해 획득한 제품
 - 양국 영역에서 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 양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양국 선박의 어로행위를 통해 잡은 어획물 및 제품
 - 양국 영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폐기물 또는 원재료 회수용 중고물품
 - 양국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전술한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한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실질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하여 양측의 합의기준에 부합할 시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함.
 - 세번변경기준으로는 HS 코드 4단위가 적용됨
 - 부가가치기준으로는 제품의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이 기준 가격으로 적용되며, 동 기준가격에 대한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상한선으로 규정됨.
 - 특정공정기준으로는 품목별 공정기준이 상이하게 적용

□ 보충적기준

- (누적기준) EU와 베트남은 양측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협정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함(원산지 관련 협약 4장 내 제 3조항).
 -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함.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의 예>

- 운송, 보관 시 제품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 보존공정
-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 등의 제거
- 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
- 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
-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 당류 착색,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혹은 전체 제분
- 과일, 견과류, 채소류에 대한 탈피, 탈각, 씨 제거
- 연마, 단순 분쇄, 단순 절단
- 등급화, 선별, 분류, 매칭
- 병, 캔, 플라스크(flasks), 가방, 케이스, 박스 등에 단순히 넣기 등 단순 포장 공정
- 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
-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
- 제품의 희석, 변성, 건조
- 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
- 전술된 공정 중 2개 이상 공정의 조합
- 동물 도살

-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및 62) 생산 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 내에서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이상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원산지 관련 협약 제 3조 7항).
 - *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인정기준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기준을 따름
- 또한, 완제품생산 이후 베트남에서 발행될 원산지 증명서에는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함.
- 이 밖에도, ASEAN산 갑오징어(HS 030741) 및 문어(HS 030751) 제품이 갑오징어 및 문어 가공제품(HS 160554, 160555)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가 인정됨.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Application of Article 3(2)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함.
- (미소기준) 양측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역외산 재료가 품목별로 합의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가 제품 공장도가격(Ex-works) 기준의 10% 이하로 사용되었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주기로 함.
 - 다만, 섬유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해서(Introductory Notes)를 마련해 별도의 미소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섬유) 사용된 역외산 섬유재료의 비율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 대비 8%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됨.
 - 한편, HS 50~63류 섬유품목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허용기준(Tolerance)은 공장도가격 기준이 아닌 중량기준이 적용되는데, 총중량 대비 10% 이하로 사용되었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며 2개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됨.

<기초방직재료>

견(silk), 양모(wool), 조수모(coarse animal hair), 섬수모(fine animal hair), 마모(horsehair), 면(cotton), 제지원료 및 종이(paper-making materials and paper), 아마(flax), 대마(true hemp),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코코넛·아바카·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coconut, abaca,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합성 인조필라멘트(synthetic man-made filaments), 인조 필라멘트(artificial man-made filaments), 전도성 필라멘트(current-conducting filaments), 폴리프로필렌·폴리에스테르·폴리아미드·폴리아크릴로니트릴·폴리이미드·PTFE 등의 합성섬유(synthetic man-made staple fibres of polypropylene, polyester, polyamide, polyacrylonitrile, polyimide, polytetrafluoroethylene, artificial man-made staple fibres),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polyester whether or not gimped),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금속드리사(HS 5605) 제품, 금속드리사(HS 5605)의 기타제품, 유리섬유(glass fibres), 금속섬유(metal fibres)

- 이 밖에도,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및 알루미늄 호일 또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이루어진 스트립 결합 제품(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의 경우, 중량에 대한 허용치는 10%가 아니라 각각 20%, 30%로 합의
- (기타) 이 밖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재료의 사용비율이 공장도가격 기준 10% 이하 또는 총 중량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 인정해주기로 함.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육류(HS 02), 어패류(HS 03), 낙농품·조란·천연꿀(HS 04), 기타동물성
생산물(HS 05), 산수목·꽃(HS 06), 채소(HS 07), 과실·견과류(HS 08),
커피·차·향신료(HS 09), 곡물(HS 10), 밀가루·전분 등(HS 11), 채유용
종자·인삼(HS 12), 식물성추출물(HS 13), 기타식물성생산물(HS 14),
동식물성유지(HS 15), 당류·설탕과자(HS 17), 코코아·초콜릿(HS 18),
곡물제품 및 빵류(HS 19), 채소·과실조제품(HS 20), 기타조제식료품
(HS 21), 음료·주류·식초(HS 22), 조제사료(HS 23), 담배(HS 24)
- (구분회계기법) EU와 베트남은 대체가능한 원산지·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제조에 사용되었을 경우 재료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구분회계기법(accounting segregation)을
사용해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동 회계기법은 서면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관당국의 요청 시,
재고량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 사용한
회계기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만일,
생산자가 관련 규정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관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철수(withdraw)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기타) 세트제품 등
 - (세트제품) 양측은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 제품가격이 전체 세
트제품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함.
 - (변형불가) 가정용제품(for home use)의 경우, 제품의 보관용이
또는 빠른 식별을 위해 상표, 썸, 라벨 등을 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변형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규정

2.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

- EU-베트남 FTA 내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수출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받거나, 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자 혹은 수출대리인이 협정문 부속서에 나와 있는 증명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출세관당국에서 심사/승인 후 발급함.
- 수출자(혹은 수출대리인)는 세관당국의 요청시, 증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을 넘길 수 없음. 다만, 기입도중 발생한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ISSUED RETROSPECTIVELY'라는 영문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원산지증명서 서식 캡처본>

SPECIMEN OF A CERTIFICATE OF ORIGIN

MOVEMENT CERTIFICATE

1. Exporter (Name, full address, country)	EUR.1 No		
	Se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3. Consignee (Name, full address, country) (Optional)	2. Certificate used in preferential trade between		
	 And (Insert appropriate countries, group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4.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in which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5.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of destination	
6. Transport details (Optional)	7. Remarks		
8. 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¹⁾; Description of goods	9. 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³, etc.)	10. Invoices (Optional)	

* 주1)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EU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서식만 나와 있으며,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음. 동 서식은 준비 되는대로 추후 발표 예정

* 주2) 서식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 EU 집행위

□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를 들 수 있음. 인보이스 총액이 6000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origin declaration)를 할 수 있으나,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함.
- 인증수출자 등록을 원하는 수출자는 제품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세관당국에게 제출하고 세관당국의 심사를 거침. 세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고 수출자의 고유 인증번호를 발급해줌.
 -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출자가 지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음.
- 원산지신고 문구(Origin declaration)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Delivery note), 혹은 그 외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s) 내에 명시되어야 함. 또한, 원산지 신고문구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함.

<원산지 신고문구 예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인증서 내 수출자 원본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다만,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세관당국에 서면을 통해 약속한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 생략이 가능함.

□ 사후검증

- EU와 베트남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세당국을 통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수입당국은 수출자가 FTA 원산지 혜택을 부당하게 부여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수행하게 되며, 관세당국은 검증을 위해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할 권리를 지님. 수입당국은 검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정지할 수 있음.
- 수입당국이 검증을 요청한 날짜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혹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국은 해당제품의 원산지 자격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의 면제 및 관련서류 보관의무

- 상업용 목적이 아닌 개인 간 주고받는 물품 또는 여행용 수하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에서 면제됨. 다만, EU로 반입할 때 소포일 경우에는 500 유로, 여행자 수하물일 경우에는 1200 유로 등 금액이 제한됨(* 베트남 반입 시, 소포 및 여행용 수하물 상한액은 200 달러).
- 이 밖에도, 수출자를 포함한 수출 및 수입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해 원산지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님.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	원산지 기준
섬유 (HS 50~63)	- 미소기준(품목별 상이): 세번변경기준(CTH)*, 중량 및 공장도가격 기준, 특수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첨부 원문파일 참조 - (예시 1) 견직물(HS 5007)의 원산지 기준: · 제직(weaving)을 동반하는 천연스테이플섬유 및/혹은 인조스테이플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필라멘트사의 압출(extrusion) 또는, ·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가지 처리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 등)을 거친 제품. 다만, 날염전 역외산 옷감의 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 가격의 47.5%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시 2)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01~5507) 원산지 기준: 인조섬유의 압출(extrusion) 공정 - (예시 3) 태피스트리 제품(HS 5805): 세번변경기준 - (예시 4) 자수포(HS 5810):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부품 사용비율 50% 이하
자동차 (HS 87)	- 완성차(HS 87):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45% 이하 - 부분품(HS 8714):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부품 비율 50% 이하 - 모터사이클,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HS 8711):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기계 (HS 84)	- 세번변경기준 혹은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 다만 원자로용 연료체(HS 8401),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HS 8407),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HS 8408), 포크 리프트트럭(HS 8427)의 경우, 원산지 인정기준이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50% 이하가 적용 · 볼베어링·롤러베어링(HS 8482)의 경우,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40% 적용
전기전자제품 (HS 85)	-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40~70% - 전동기·발전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HS 8501, 8502): 세번변경기준(HS 8503 제외)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 휴대용전등(8513):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부품비율 50% 이하 - 음성녹음·재생기기(HS 8519): 세번변경기준(HS 8522 제외)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40% 이하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HS 8521): 세번변경기준(HS 8522 제외)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70% 이하 - 애자(8546), 절연용 물품(8547), 일차전지 및 축전지(8548):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첨부 원문파일 참조

신발 (HS 64)	- 세번변경기준 · 단, 신발류 부분품(HS 6406) 중 역외산 갑피(Upper)가 역외산 안창(inner sole)에 부착된 채 수입되는 것은 제외
모자 (HS 65)	- 세번변경기준
의약품 (HS 30)	- 세번변경기준 - 의약품(HS 3004):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이하
고무제품 (HS 40)	-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 다만, 고무타이어(HS 4012) 중 재생타이어,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제품의 경우, 중고타이어의 재생공정(Retreading of used tyres)이 해당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함. 재생타이어,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를 제외한 다른 고무제 타이어에 대해서는 HS 4011 및 HS 4012가 아닌 제품을 갖고 제조되어야 함,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중에서 선택
가구,조명기구 (HS 94)	-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 품목별 원산지 인정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원문파일 참조

IV

투자·시장접근·지속가능발전

1. 투자분야

□ (투자보호) 송금, 손실보상, 수용 등 투자보호 규범을 세움.

- (송금, 대위변제) 양측은 투자자본·증액투자·로열티 지불 등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될 수 있는 송금 조항 및 투자국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기관에서 투자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 투자자가 갖는 권리가 승계되는 대위변제 조항을 삽입함.
- (손실보상 및 수용) 자국 내 투자자가 폭동, 내란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조항을 두었으며, 수용조항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investment of investor)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없게 함.
 - 다만, 공익이 목적이거나 적법절차 준수, 비차별적 방식,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국유화 및 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 (투자자유화) 양측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을 두어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

- 기업의 설립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투자자유화의 적용대상임. 다만, 아래의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
 - 핵원료의 채굴, 제조 및 가공
 - 무기 제조·거래, 군수품, 전쟁물자
 - 국내연안해상운송(cabotage)
 - 항공운송 서비스: 이 중 항공기 수리 및 정비,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예약서비스(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지상조업서비스(ground handling services), 공항운영서비스는 협정 적용에 포함

- 이 밖에도, 아래 분야들은 최혜국대우 조항 적용에서 제외됨.
 - 통신서비스(우편 서비스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제외), 문화, 스포츠, 레크레이션 서비스, 어업 및 양식(aquaculture), 임업, 광업(석유 및 가스 포함)

□ (분쟁해결) ICS 제도 채택

- EU와 베트남은 분쟁해결 제도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S)가 아닌 ICS 제도를 채택함. ISDS의 경우, 현재 EU에서 협상 중인 EU-미국 간 FTA(TTIP)의 최대 난제로 이 협상에서 ISDS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지 시위가 계속돼 왔음.
-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5년 5월 5일, ISDS 조항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 창설을 제안함. 이 제도는 1심법원 및 항소법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투자법원을 가지는데, 투명한 소송절차 및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집행위의 ICS 제안이 EU와 베트남의 FTA 협상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던 만큼, 현지에서는 EU-베트남 FTA 협정문에도 ISDS 대신 ICS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음.
- 집행위 통상총국 투자 분야 협상담당가인 Mr. Felipe Palacios Sureda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ICS 제도는 비단 TTIP와 EU-베트남 FTA에서만 적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EU의 무역투자 협상에서도 ISDS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힘.

2. 시장접근

□ (자동차 및 부품) 베트남, 국제기준 조화에 맞추기로 합의

-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를 국제표준으로 삼고 비관세장벽 철폐, 지속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WP.29 :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 자동차 기술표준 조화 및 개발 담당 작업반

- 또한 통일된 기술규정 채택 및 규정의 상호인정을 위해 베트남에 1958년 협정* 가입을 권고

* 1958년 협정 : UNECE 협정으로 자동차,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기준의 국제조화 및 규정 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가입)

- FTA 협정문에 따라, 베트남은 UNECE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을 인정해야 하며, 협정 발효 5년부터는 EC 적합성승인(EC Certificate of Conformity) 역시 인정해야 함.

- 한편, 양측은 자국법에 따라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 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음. 만약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시장 철회(withdraw a product) 요구가 가능함.

* 자동차의 경우 기준거는 UNECE 규정 또는 EC 형식 승인이며, 부품의 기준거는 UNECE 규정임

- 이 밖에도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규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무역협력을 증진키로 함.

- 이 같은 사항은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적용되며, 발효 10년 후부터 재검토 가능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EU 제약기업에 대해 시장개방, 'Made in EU' 표기 가능

- 양측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기로 함. 의약품에 대해서는 WHO, OECD, ICH, PIC/S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며, 의료기기는 IMDRF의 규정기준을 따르기로 함.
-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제품의 가격, 기준 등에 대해 신속하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적용시점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 원산지 표기 관련, 베트남은 EU 의약품에 대해 'Made in EU'으로 표기하는데 합의함.
- 한편, FTA 협정문은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함(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 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 (공정경쟁) 국영-민간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부조달 시장 개방

- 국영기업(SOE) 및 지정독점 기업들의 영리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익, 국방, 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영리활동으로부터 오는 매출액이 연간 2억 SDR(Special Drawing Right)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제외됨.

- 이 밖에도,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부속서를 별도로 두고 베트남 중소기업 및 일부 기업*들의 특정 활동에 대해 공정경쟁 조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함.

* 예외기업 : Petrovietnam(석유·가스), EVN(에너지), Vinacomin(광물), SCIC(투자), DATC(부채 조정), Airport corporation of Vietnam(베트남 국영 항공사), 인쇄·시청각서비스·출판 분야 국영기업

- 정부조달에 있어, 양측은 한-EU 조달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3. 지속가능발전

- (노동 및 환경) 노동조건 및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데 협의
 - 양측은 '1998년 ILO 선언'상의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창출하기로 했으며,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의무를 이행하기로 함.
 - '1998년 ILO 선언'상 핵심노동기준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 철폐,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 이 밖에도 교토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준수 등 국제기후변화체제 발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한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법의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에코라벨,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무역을 촉진한다고 밝힘.
 - 양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유엔세계협약(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기업 및 사회적 정책에 관한 ILO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기준을 따르기로 함.
- (협정이행) 협정내용 이행에 있어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로 회부하는 등 협정 이행을 강조함.
 -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측 1인, EU측 1인 및 비당사국 1인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지속 가능 발전 특별위원회(Specialised committee)에서 양측 동의하에 15명의 전문가 패널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함. 전문가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양측에 전달하게 됨.
 - 양측은 전문가 패널의 판정을 이행해야 하며, 특별위원회가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

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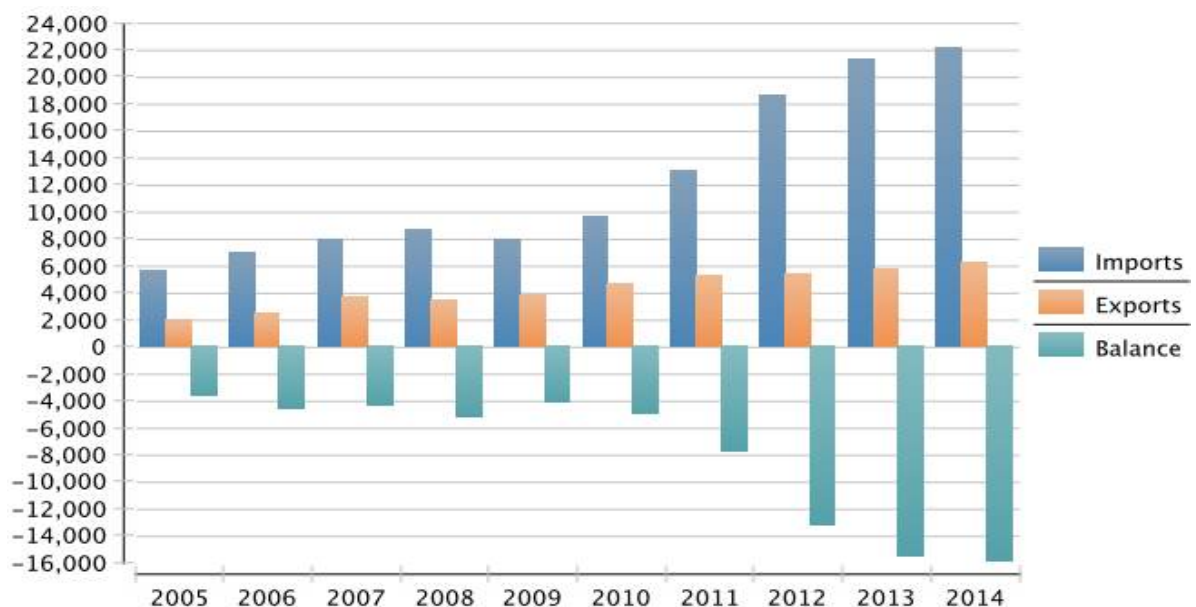
1. 3자간 교역현황 및 투자현황

□ EU-베트남 교역현황 및 투자현황

- (교역) '14년 EU-베트남간 교역규모 총 283억 유로
 - EU는 베트남의 2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8대 교역대상국임 (*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
 -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이외에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주요 교역국임.
- (무역수지) '14년 EU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62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對베트남 수입액은 221억 유로로, 159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기록
 - '05년 당시 37억 유로 규모의 적자 이후, EU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지속 증가추세('05년 대비 '14년 329.7% 증가)

<'05년 ~ '14년 EU-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EU 집행위

- **(수출)** EU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이 첨단기술(High tech) 품목으로 전기기기, 장비, 기계, 운송, 화학제품 등에 집중됨.
 - 기계 및 전자제품(26.8), 화학제품(18.4%), 운송장비(11.8%), 음료·식품·담배(6.6%), 동물·축산물(5.5%), 비금속(5.0%), 광학·사진기(4.8%) 등
- **(수입)** EU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전화기, 신발, 섬유, 의복, 커피, 쌀, 해산물, 가구 등
 - 기계 및 전자제품(45.8%), 신발·모자제품(12.5%), 섬유제품(11.4%), 채소(7.7%), 플라스틱·고무제품(3.1%) 등
- **(투자)** '13년 기준 EU의 對베트남 투자규모는 총 5억 유로로 해외 투자국 중 6위('15.08.04 EU 집행위 보도자료)

□ 한국-베트남 교역현황 및 투자현황

-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국이며,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임
- **(교역)** '15년 10월 기준 우리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234억 달러, 수입액은 81억 달러를 기록, 153억 달러의 무역흑자 달성
 - '14년에도 수출액 23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0%), 수입액 80억 달러(+11.4%) 등 144억 달러의 흑자 기록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설비부품 수요 증대가 對베트남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 對베트남 수출의 약 70%가 현지진출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으로 추정
- **(수출)** 한국의 對베트남 주력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로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식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수송 및 산업용 기계류 등임. 최근에는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

- '15년 10월 기준, 전자제품류는 對베트남 수출품목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6.4%로 대폭 증가함. 반면, 철강제품의 경우 베트남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 추세
- '14년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기구부품 등 5대 품목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38%를 점유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품목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0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2,377(-5.3)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3,644(116.4)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954(-3.1)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804(0.1)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7(1.0)	1,043(37.7)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8)	719(-5.2)
자동차	402(-40.4)	437(8.7)	713(63.1)	929(72.4)
평판디스플레이	698(112.3)	1,684(64.1)	684(-59.4)	1,100(78.0)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260(-53.1)
플라스틱 제품	290(46.2)	402(38.6)	508(26.5)	626(49.2)
기 타	7,043	9,342	10,767	11,191
합 계	15,956(18.4)	21,088(32.2)	21,352(6.0)	23,388(27.8)

자료원 : KOTRA 베트남 국가정보

- **(수입)** 우리의 對베트남 주력 수입품목은 섬유제품(섬유사), 광물성연료,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등을 들 수 있음.
 -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직물제품,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 기업들로부터의 역수입이 주류
 - '15년 10월 기준,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제품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의류 제품의 경우, 전체 對베트남 수입액의 23.8%에 이르는 등 높은 수입점유율을 기록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품목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0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1,928(1.0)
신발	303(23.6)	377(24.4)	506(34.2)	446(4.4)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287(3.5)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1,151(341.6)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223(6.3)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133(-21.1)
평판디스플레이	82(168.3)	211(157.9)	194(-11.5)	122(-27.1)
원유	145(-14.1)	132(-9.0)	192(-79.6)	148(58.9)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317(159.3)
연체동물	109(11.7)	118(7.9)	168(26.9)	131(-3.3)
기 타	3,377	3,819	3,494	3,232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8,11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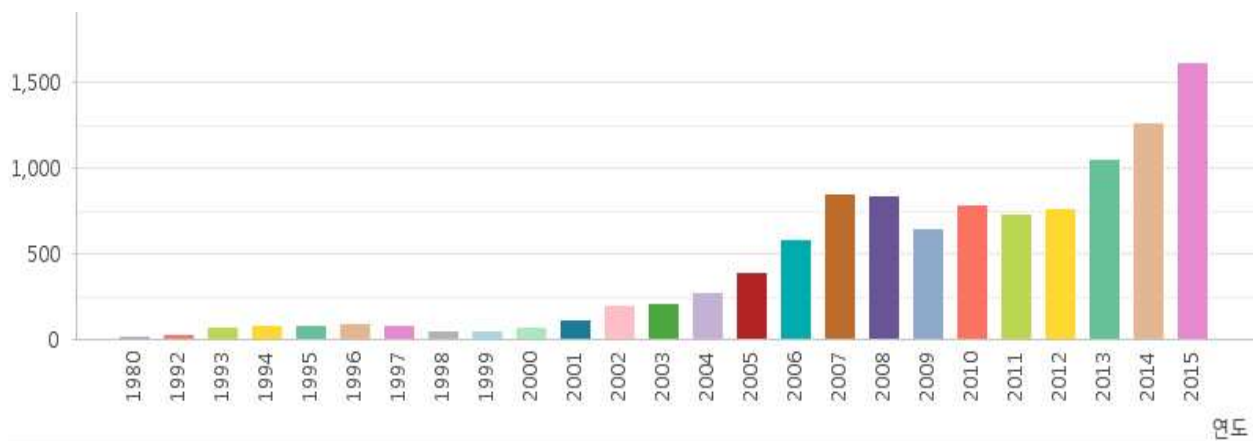
자료원 : KOTRA 베트남 국가정보

○ (투자)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

- '15년 12월 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신규법인 수는 총 3,741개사로, 약 127억 1천만 달러의 누적투자액을 기록
- '15년 연간 對베트남 투자신고건수는 1,604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며, 총 14억 9,766만 달러가 투자됨.
- '12년까지 연간 700~800건에 머물던 對베트남 투자신고건수는 '13년부터 1,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13년 신고건수 1,038건, '14년 1,257건, '15년 1,604건 등)

<연도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추이>

(단위 : 건수, 천 불)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5년 기준 제조업 분야 내 신규법인 수만 339개사로 전체 신규법인 수의 65.8%를 차지
- 누계기준 총 10억 6000만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1,162건을 기록(전체 신고건수의 72.4% 차지)
- 제조업 다음으로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도소매업(152건), 건설(109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34건), 운수업(33건) 등임

□ 한국-EU 교역현황 및 투자현황

- 우리와 對EU 무역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무역수지는 적자 지속
 - (수출) 유럽 경기 침체, 유가하락, 유로 약세 등 경기적 요인과 우리기업 해외생산 확대, 경쟁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 감소세를 보임.
 - * '15년 對EU 수출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480억 달러 기록
 - (수입) 유럽대비 양호한 국내경기, 한-EU FTA 관세인하 품목의 수요증가, 유럽車 선호 등으로 급증세
 - 단, '15년은 우리 내수 부진, 원자재價 하락으로 8.3% 감소한 572억 달러 기록

<우리나라의 對EU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5,727	4.1	49,371	-11.4	48,857	-1.0	51,658	5.7	48,079	-6.9
수입	47,424	22.5	50,374	6.2	56,230	11.6	62,394	11.0	57,199	-8.3
수지	8,303	-	-1,003		-7,373	-	-10,736	-	-9,120	-
교역액	103,151	11.8	99,745	-3.3	105,087	5.4	114,052	8.5	105,278	-7.7

자료원 : 관세청

○ (교역) '12년 이후 무역적자 지속 기록

-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 휴대폰 등 주력품목 수출이 감소하고, 자동차, 원유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이 증가

○ (수출) 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10대 주력품목의 수출 급감

-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선박 수출 급감, 전자기기(평판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출 감소

* 수출감소액(11년→15년, 달러) : 선박(-42억), 전자기기(-22억), 석유제품(-12억), 무선통신기기(-12억), 반도체(-9억), 자동차(-9억)

- 자동차, 전자제품은 EU 역내교역 1위, 3위 품목에 해당, 역내 기업과도 경합

- 한편,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원동기·펌프, 전지 등은 수출증가

* 수출증가액(11년→15년, 백만 달러): 합성수지(8), 자동차부품(10), 원동기·펌프(3), 전지(9)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화물선	2,452	6.2	3,280	7.4	2,105	5.3
자동차(2.5 이하)	2,531	6.4	2,501	5.7	2,013	5.0
탱커	900	2.3	830	1.9	1,448	3.6
경유·등유	1,642	4.1	2,475	5.6	1,389	3.5
송수신기기	1,659	4.2	1,652	3.7	1,143	2.9
무선통신기기	2,222	5.6	2,055	4.7	988	2.5
자동차(1.5 이하)	863	2.2	1,201	2.7	909	2.3
액정디바이스	1,541	3.9	1,199	2.7	879	2.2
전자집적회로	802	2.0	909	2.1	826	2.1
해양구조물	0	0	0	0	766	1.9

* 주 : 품목분류는 HS 4단위 기준
 자료원 : GTA

○ (수입) FTA 관세인하 대상품목과 對EU 만성 적자 품목 수입 급증

- 한-EU FTA에 따른 관세 혜택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고급소비재 수요 증가로 자동차 수입 급증

- 중대형 자동차는 '14년부터 무관세 대상품목으로 FTA 발효 후 연평균 수입 25.2% 증가, '14년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 리나라의 對EU 자동차 관세율 변화('11.7→'14.7) : 중·대형(1,500cc초과) 승용차 (8%→0%)

- 對이란 제재와 FTA에 따른 관세인하(3%→0%)로 북해산 원유 수입 증가

<한국의 對EU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2,500cc이하)	1,977	3.8	2,693	4.7	3,301	6.3
원유	2,969	5.6	1,545	2.7	2,088	4.0
자동차(2,500cc초과)	874	1.7	1,373	2.4	1,789	3.4
반도체제조용장비	1,655	3.1	1,600	2.8	1,659	3.2
항공기	1,314	2.5	1,944	3.4	1,368	2.6
자동차(3,500cc초과)	720	1.4	933	1.6	1,073	2.0
자동차(1,500cc초과)	564	1.1	779	1.4	1,064	2.0
의약품	931	1.8	1,106	2.0	1,036	2.0
휘발유	666	1.3	1,134	2.0	948	1.8
엔진	639	1.2	685	1.2	531	1.0

* 주: 품목분류는 HS 4단위 기준

자료원 : GTA

- (투자) '15년 기준 EU의 대한 투자는 약 24억 9천만 달러 기록 (신고액 기준), 미국 다음으로 투자국 2위 차지(* 미국의 對한국 투자 규모는 54억 7천만 달러)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에 약 17억 6천만 달러, 제조업에 약 6억 9천만 달러가 투자됨.
- 서비스 분야 중, 금융·보험 부문에 약 12억 달러가 투자되며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비즈니스 서비스업(9천만 달러), 공공·기타서비스(5천만 달러) 순
-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화학공업 분야에 약 3억 달러가 투자돼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 전기전자(1억 8천만 달러), 기계·장비(1억 7백만 달러), 기타제조(7백만 달러) 순

<EU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 건수, 천 달러)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임업	0	0	2	400	0	0
제조업	82	1,527,687	82	4,514,036	94	693,973
식품	3	105,150	8	82,086	9	49,473
섬유·직물·의류	1	37,785	3	3,340	2	198
제지·목재	0	0	3	15,910	0	0
화학	17	411,907	16	2,249,505	27	305,828
의약	8	232,427	1	100	5	25,119
비금속광물	5	513,857	2	1,906,290	3	1,344
금속	5	16,122	5	24,150	4	7,650
기계·장비	14	80,325	22	200,272	12	107,840
전기·전자	11	10,206	8	14,906	20	181,316
운송용기계	16	112,926	11	17,231	8	7,481
기타제조	2	6,981	3	246	4	7,725
서비스업	252	3,253,038	227	1,955,498	250	1,761,365
도·소매(유통)	104	270,906	100	374,802	92	325,859
음식·숙박	2	271	13	26,142	10	1,595
운수·창고(물류)	11	5,330	4	4,790	9	16,260
통신	0	0	1	578	2	367
금융·보험	31	1,799,734	28	492,792	49	1,217,502
부동산·임대	26	341,617	11	57,784	13	34,590
비즈니스서비스업	69	823,655	65	903,831	60	96,492
문화·오락	2	269	5	94,778	6	16,543
공공·기타서비스	7	11,257	0	0	9	52,157
전기·가스·수도·건설	4	21,078	7	33,892	5	39,346
전기·가스	1	92	3	32,906	1	37,286
종합건설	3	20,986	3	890	1	14
전문직별건설	0	0	1	96	3	2,047
합 계	676	9,603,606	634	13,007,251	698	4,989,37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

□ EU 시장에서 한국-베트남 경쟁구도

- EU-28개 회원국 전체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15년 기준으로 총 19억 1,414만 달러를 수입하며 전년대비 14.7% 감소를 보임.
 - EU 시장에서 한국은 수입국 중 8위이며, 베트남은 12위 차지
- EU의 對베트남 수입을 살펴보면, '15년 총 3,322만 8천 달러를 수입하며 전년대비 12.99% 증가
 - * '15년 기준으로 EU의 20대 수입국 중, 유일하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만 증가
 -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기기(HS 85) 수입이 총 1,189만 3천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수입을 보임(베트남의 對EU 총 수출의 35.79% 차지).
 - 그 뒤로, 기계(HS 84) 476만 달러, 신발(HS 64) 397만 9천 달러, 의류(HS 62) 223만 7천 달러, 커피·차(HS 09) 162만 3천 달러 등 상위 5대 수입품목이 전체수입의 73.73%를 차지
-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對EU 10대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기기기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모두 對EU 수출 1위 품목

<한국, 베트남 對EU 수출 경합 품목 비교(2015년)>

한국 10대 수출 품목			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순위	HS 코드	품목명
1	85	전기기기	1	85	전기기기
2	87	자동차	2	84	기계
3	84	기계	3	64	신발
4	89	선박	4	62	의류
5	39	플라스틱	5	09	커피·차·향신료
6	90	광학	6	94	가구류·조명기구
7	72	철강	7	61	의류
8	27	광물	8	42	가죽제품
9	29	화학	9	03	어패류
10	40	고무	10	39	플라스틱

* 주 : 노란색 음영은 겹치는 품목

자료원 : WTA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EU 경쟁구도

- 베트남 시장에서 한-EU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양측의 1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철강제품, 광물성연료, 자동차, 광학·의료·정밀기기 등의 품목이 동일하며 특히 우리 수출 1위~3위 품목이 모두 경합품목에 속함.

<한국, EU 對베트남 수출 경합 품목 비교(2014년)>

한국 10대 수출 품목			EU 10대 수출 품목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순위	HS 코드	품목명
1	85	전기기기	1	84	기계
2	84	기계	2	30	의료용품
3	39	플라스틱	3	85	전자기기
4	72	철강	4	90	광학·측정기기
5	73	철강제품	5	27	광물성연료,에너지
6	60	편물	6	39	플라스틱
7	27	광물성연료,에너지	7	38	각종화학공업생산물
8	87	자동차	8	23	조제사료
9	55	인조스테이플섬유	9	87	자동차
10	90	광학·측정기기	10	73	철강제품

* 주1 : 노란색 음영은 겹치는 품목

* 주2 : 2014년도 수치가 가장 최근 수치

자료원 : ITC Trade map

VI

시사점

□ 베트남, 세계의 생산기지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

- 중국에 이어 제2의 세계 생산기지로 주목 받아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4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의 최대 투자진출대상국임.
- 특히 2013년 이후 연간 1,000건이 넘는 투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의 FTA 타결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EU와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 변화

- **(베트남시장)**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EU와 한국의 경합품목은 10개 품목 중 7개에 달함.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EU는 베트남시장에서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라서 한국-베트남 FTA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입장에 설 것임. 따라서 우리는 EU-베트남 FTA 발효에 대비하여 사전 선점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베트남의 경우, FTA로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EU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이 더욱 심화시킬 전망
- **(EU시장)**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EU 내에서 동 FTA로 같은 관세 혜택을 향유할 예정. 엔화약세,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 등 한국이 EU 시장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산 제품의 EU 시장 진출 확대는 한국 제품의 EU 시장 경쟁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 베트남을 통한 대 EU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

-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EU-베트남 FTA가 베트남을 경유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對베트남 투자 진출 역시 보다 활발해질 것.

- (관세 혜택) EU-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 상당히 높은 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의류, 신발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
- (관세 이외의 혜택) 베트남은 주요 수출품목의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최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선의 다변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대비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동 FTA 발효 시, 특혜세율 적용과 더불어 한국산 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인 대응방안

- (양허스케줄 확인) 대부분의 품목은 발효 즉시 무관세이나, 일부 민감품목들의 경우, 발효 후 즉시철폐가 아니라 4년, 6년, 8년 후 무관세가 되는 등 단계적으로 양허되고 있는 바, 관련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양허스케줄을 확인하여 대비가 필요
-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확인) 일부 베트남 품목의 경우 EU 수출 시 GSP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현재 적용중인 GSP는 7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됨.

* 통상적으로 EU의 GSP 유예기간은 2년이지만, 베트남과는 협상을 통해 7년으로 연장됨

- 유예기간 동안에는 GSP 특혜세율과 FTA 양허스케줄에 따른 관세율 중 혜택이 더 큰 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EU FTA의 발효시기 및 품목별 양허스케줄을 확인해 두었다가, GSP와 FTA 협정세율을 비교해보고 보다 많은 관세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관세혜택 홍보) FTA 체결로 인한 혜택을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 생산 시, EU-베트남 FTA 누적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됨. 한국산 직물은 현재 높은 품질력으로 인정받고 있음.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이 같은 누적기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확대하는데 활용이 필요

- 비원산지 재료들이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공정, 가격 기준, 중량 기준 등 품목별로 그 기준들이 매우 상이한 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살펴보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향후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 장기적인 대응방안

- **(노동환경 기준의 향상)** 이번 EU-베트남 FTA에 따라, 노동, 생산 및 투자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베트남의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베트남 정부는 노동 및 생산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노동기준들을 대폭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산 제품들이 EU에서 요구하는 노동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제품의 EU 수출 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노동환경기준을 재점검해 대EU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함.
- EU-베트남 FTA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 기술, 노동, 원산지 등 EU에서 제시한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향후 해외 원부자재 공급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수입 공급처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기업의 성장)**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베트남이 EU와 통일된 기술규정을 채택하기로 한 만큼, 향후 베트남산 제품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의 대EU 수출 주력제품이 자동차 및 부품인 만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산 제품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될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함.

#

첨 부

1. EU측의 관세양허스케줄 원문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february/tradoc_154200.pdf

2. EU측의 관세양허 주해본 원문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february/tradoc_154199.pdf

3. 품목별 특정공정기준 원문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february/tradoc_154206.pdf

SPECIMEN OF A CERTIFICATE OF ORIGIN

1. Exporter (Name, full address, country)	EUR.1 No		
	Se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2. Certificate used in preferential trade between And (Insert appropriate countries, group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3. Consignee (Name, full address, country) (Optional)	4.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in which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5.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of destination
	6. Transport details (Optional)		
7. Remarks			
8. 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¹⁾; Description of goods		9. 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³, etc.)	10. Invoices (Optional)

(2).Complete only where the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require.

11. CUSTOMS (EU) or ISSUING AUTHORITIES (VN) ENDORSEMENT <i>Declaration certified</i> Export document ⁽²⁾ FormNo Of Customs office Issuing country or territory Stamp Place and date (Signatur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ssue of this certificate. Place and date (Signature)
--	--

13. REQUEST FOR VERIFICATION, to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this certificate is requested. (Place and date) Stamp (Signature)	14. RESULT OF VERIFICATION Verification carried out shows that this certificate ⁽¹⁾ ☐ was issued by the customs office (EU) issuing authority (VN) indicated and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urate. ☐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to authenticity and accuracy (see remarks appended). (Place and date) Stamp (Signature)
(1) Insert X in the appropriate box.	

NOTES

1. Certificate must not contain erasures or words written over one another. Any alterations must be made by deleting the incorrect particulars and adding any necessary corrections. Any such alteration must be initialled by the person who completed the certificate and endors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EU) issuing authority (VN) of the issuing country or territory.
2. No spaces must be left between the items entered on the certificate and each item must be preceded by an item number. A horizontal line must be drawn immediately below the last item. Any unused space must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s impossible.
3. Goods must be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practice and with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SPECIMEN OF A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for exports from the Union to Vietnam)

APPLICATION FOR A MOVEMENT CERTIFICATE

1. Exporter (Name, full address, country)	EUR.1No					
	Se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2.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to be used in preferential trade between and (Insert appropriate countries or group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3. Consignee (Name, full address, country) (Optional)	4.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in which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5.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of destination				
	7. Remarks					
6. Transport details (Optiona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data-bbox="177 992 963 1982" style="width: 60%;"> 8. 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¹⁾ Description of goods </td> <td data-bbox="963 992 1182 1982" style="width: 20%;"> 9. 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³, etc.) </td> <td data-bbox="1182 992 1417 1982" style="width: 20%;"> 10. Invoices (Optional) </td> </tr> </table>			8. 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¹⁾ Description of goods	9. 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³, etc.)	10. Invoices (Optional)
8. 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¹⁾ Description of goods	9. 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³, etc.)	10. Invoices (Optional)				

(1) If goods are not packed, indicate number of articles or state « in bulk » as appropriate



작성자

◆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6-020

EU-베트남 FTA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33-0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EU-베트남 FTA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